

## 8.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년 1월 15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8일
- 상정일자 :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1년 2월 1일),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승대 혁신성장국장)

### □ 제안 이유

- 현행 조례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18. 6. 12) 전에 제정·시행(2013. 12. 20)됨에 따라 미반영된 법령 위임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물산업전략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제7조)
- 물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안 제8조)
-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안 제9조~제10조)
- 지역 물기업 지원(안 제11조~제12조)
- 물산업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의 유치(안 제13조)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충호)

#### □ 적법성 여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18. 6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률과 조례의 내용과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 법률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조례 제정의 목적인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시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법 제5조에 의거 국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물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 방향 및 목표'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였음.
- 안 제5조~제7조에서는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자문기구인 물산업 전략위원회의 설치근거, 자문대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던 것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제12조에서는 지역 물기업에 대해 시장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재정적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이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음.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8. 6)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은 상기 법률의 제정·시행 시기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야 함에도 개정이 지연되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 본 조례의 개정을 발판삼아 신규 입주기업 유치,물관리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수자원분야 세계 최대 행사로써 금년 9월 우리 시에서 개최 예정인 ‘제17차 IWRA(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세계물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 요지	답변 요지
○ 상위 법률 제정 2년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늦은 것이므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함.	○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 물산업전략위원회, 물산업클러스터, 대구환경공단, 물산업지원센터 등 물산업에 대한 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음.
○ 물산업 업무 및 사업이 대구시, 다이텍, 대구테크노파크 등지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업무 집중이 필요함.	○ 검토하도록 하겠음.

####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